

한부모 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안내

한부모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합니다!

1. 기본 급부

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 등에 급부^{※1}

● 급부금 대상자

■ 다음 ①~③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①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는 자
- ② 공적연금 등^{※2}을 수급하고 있으며,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액 정지되는 자^{※3}
- ③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는 등 수입이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와 같은 수준이 된 자

※1 아동부양수당법에 규정된 '양육자'도 대상이 됩니다.

※2 유족연금, 장애연금, 노령연금, 산재연금, 유족보상 등

※3 이미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, 아동부양수당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,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된 것으로 추측되는 자도 대상이 됩니다.

● 급부액

1세대당 5만엔, 둘째부터 1인당 3만엔

2. 추가 급부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고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에 급부

● 급부금 대상자

상기 기본 급부 대상의 ① 또는 ② 해당자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고 수입이 감소한 세대

● 급부액

1세대당 5만엔

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뒷면에 계속됩니다.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급부금의 지급 절차

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(앞 1. ①에 해당되는 경우)

- ▶ 기본 급부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▶ 8월경에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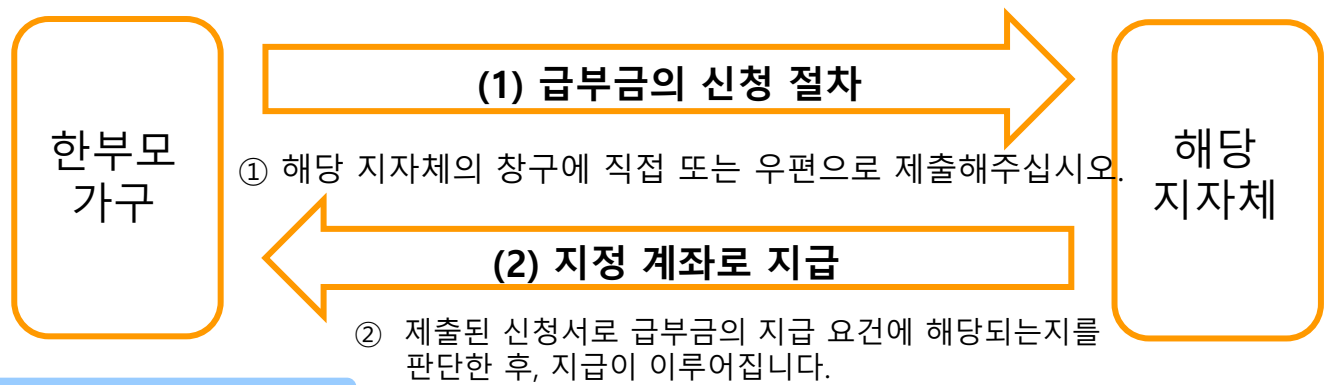
【 주의 사항 】

- ※ 급부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송부하는 신고서를 반송해 주십시오.
- ※ 아동부양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정했던 계좌를 해지했다는 등, 급부금 지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입금 지정 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수속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추가 급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
- ▶ 정기 현황 확인시 (8월) 등에 맞추어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의 신청을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신청 내용 확인 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.

그외의 경우 (앞면 1. ②, ③에 해당되는 경우)

- ▶ 기본 급부 및 추가 급부(1.②만) 모두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▶ 신청서에 입금 계좌 등을 기입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창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.
- ▶ 급부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내용 확인 후에 지정 계좌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.



문의처

“한부모 세대 임시특별급부금” 콜센터

0120-400-903 (접수시간: 평일 9 : 00~18 : 00)

-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구청촌의 “한부모 세대 임시특별급부금” 담당 창구에 문의하십시오.



“한부모 세대 임시특별급부금”의
“입금 사기” 및 “개인 정보의 사취”에 주의하십시오.

자택이나 직장 등에 도도부현, 시구청촌 및 후생노동성(직원) 등을 말하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왔을 경우는 해당 시구청촌 혹은 가까운 경찰서 (또는 경찰상담 전용전화 (# 9110)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